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75

발의연월일: 2021. 3. 22.

발 의 자:김민석·강득구·박성준

유기홍 • 이상헌 • 이용빈

장철민 · 진성준 · 허종식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가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과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 ·교육 등에 대한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의 재발 을 방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 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도 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개선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및 제59조의17 신설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제59조의16 및 제59조의1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16(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장애 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3항에 제3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7. 제59조의16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장애인학대행위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u> <신 설></u>	제59조의16(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
	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
	<u>다.</u>
	②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
	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
	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
	<u>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u>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90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의6. (생 략) <u><신 설></u>

4. ~ 7. (생략)

④ (생략)

- 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

 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다.
-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 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3) -----
 - 1. ~ 3의6. (현행과 같음)
 3의7. 제59조의16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반지 아니한 장애인학대행위자
 - 4. ~ 7.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